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한류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법률 2050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류연관상품의 정의(안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수산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의 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관광상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한류연관상품에 해당한다고 고시한 상품을 의미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3조)

- 1)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수립하되, 한류정책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음
- 2) 다만,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은 그러지 아니함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1)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 수행계획,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업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함

라.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안 제5조)

실태조사에는 한류에 대한 국가별 인식,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한류산업등의 주요 동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마.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안 제6조)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바. 한류정책협의회(안 제7조)

- 1) 한류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한류연관상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한류정책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 2)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장 1명과 다음의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함
 - ①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유산청장
 - ② 한류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 3)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사.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안 제8조)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교육·연수·연구 등에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아.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조)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자.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안 제10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제작 및 유통·수출과 관련된 창업 등이 있으며,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차.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안 제11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정보·인력 등의 교류·협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 사업의 공모 및 공동마케팅 등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해외의 한류 산업등 분야의 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협력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카. 전담요건의 지정요건 등(안 제12조)

- 1) 공공기관이거나,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거나,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한류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일 것
- 2) 법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성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함

타. 협회의 설립인가 등(안 제13조)

-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사업 및 그 집행,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총회, 조직 및 운영, 자산 및 회계, 정관의 변경,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협회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및 학술대회, 국내외 한류 관련 문화교류행사, 국내외 한류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파.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5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4.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의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 등 유·무형의 관광상품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그 밖에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수립하되,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정책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정의를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업사항

5.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에 대한 국가별 인식

2.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 한류산업등의 주요 동향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한류정책협의회) ① 한류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3. 한류연관상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한류정책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유산청장
2. 한류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

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류산

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작하기 위한 창업
3.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유통·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한류사업자 간 기술·정보·인력 등의 교류·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 활용 촉진
2. 사업의 공모·제안, 공동마케팅 등 한류사업자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3. 해외의 한류산업등 분야의 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협력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2.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 성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 국내외 한류 관련 문화교류 행사 개최

3. 국내외 한류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등의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에 관한 업무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장 별 칙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연 락 처	(044) 203 - 3334